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
----------	----

제출일자 : 2007. 10. 10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주차장법 제4조」에 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법령의 조례위임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3개 구역 이내로 지역여건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 제2조의2 신설

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관리자 선정순서 중 기타의 경우에 납부 방법을 1년 단위로 선납하고, 분납시 연4회 이내에 연6%의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게 함 ▷제6조제2항 표의 3.

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전일제, 주간제(08:00 ~ 20:00), 야간제(20:00 ~ 익일08:00)로 운영 ▷제13조제3항.

라. 주거지전용주차장 등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동장이 추천하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함 ▷제13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나. 예산 및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07. 9. 7 ~ 2007. 9. 27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3개 구역 이내로 지역여건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표 제3호 기타의 경우의 납부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전일제, 주간제(08:00~20:00), 야간제(20:00~다음날 08:00)로 운영한다.

⑤ 주거지전용 주차장 등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주차 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3개 구역 이내로 지역여건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② (생 략)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② (현행과 같음)	
선정순서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1. ~ 2. (생 략)			
3.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3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 ① ~ ② (생 략)		제13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정기권 등으로 일반이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 전일제, 주간제(08:00~20:00),야간제(20:00~ 다음날 08:00)로 운영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제6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사하구에 등록된 자생 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 주차장 등은 ----- -----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	